

의안번호	제4호
의결 년월일	2026년 2월 5일 (제33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송영천 의원 등 3인
제출연월일	2026. 1. 23.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호
----------	-----

발의년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송영천·정옥균·심정수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2026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실운전 증빙자가 포함되어 실운전 증빙자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차등지급(20만원)함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에 실운전 증빙자 추가
- 지급액 및 방법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의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2호
- 입법예고(2026. 1. 26. ~ 2026. 2. 1.) : 제출의견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금산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일반대상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를 말한다.

3.“실운전증빙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령운전자”를 “각호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반대상자

나. 실운전 증빙자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운전 증빙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고령운전자”란 <u>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u>을 말한다.</p> <p>2. “<u>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u>”이란 <u>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u>을 말한다.</p> <p><신 설></p> <p>제5조(지원 및 대상) ①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금산군</u>----- ----- ----- -----.</p> <p>2. “<u>일반대상자</u>”란 <u>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u>를 말한다.</p> <p>3. “<u>실운전증빙자</u>”란 <u>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u>를 말한다.</p> <p>제5조(지원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군수의 확인을 받은 <u>고령운전자</u>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지급액 및 방법) ① <u>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10만원 이내로 한다.</u></p>	<p>② ----- ----- ----- ----- <u>각 호의 대상자</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일반대상자</u></p> <p style="margin-left: 20px;">나. <u>실운전 증빙자</u></p> <p>제6조(지급액 및 방법) ① <u>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제2항의 각 호의</u></p>

<p>② (생략)</p> <p>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② (생략)</p> <p><u><신설></u></p>	<p><u>대상자에게 차등지급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실운전 증빙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p>
---	---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③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제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